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22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허성무·최민희·박민규

김문수 · 이재관 · 윤준병

김태선 • 이수진 • 김성환

안도걸 • 박용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안하면서,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00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

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"로한다.

제78조제1항제7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

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역산업 균형발전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으로의"를 한다.

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산업 균형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 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·보조 또는 융자
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제76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 제76조(계정의 구분) -----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 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. 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 정으로----. 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세출) ① -----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 7. -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전계정으로부터의-----8. ~ 12. (생 략) 8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제주 6. 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전계정으로의-----7. (생략) 7. (현행과 같음)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

-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| 세출) ① -----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5. (생략)
-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7. ~ 11. (생 략)
-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14. (생 략)
- 15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16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~ 5. (생략)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제주</u> 6. -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전계정으로부터의-----
 - 7. ~ 11. (현행과 같음)

 - 1. ~ 14. (현행과 같음)
 - 15. 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지역산업균형발 전계정으로의-----
 - 16. (현행과 같음)
 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특 입과 세출) ① ------
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-----지역 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부터의-----
 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-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<u>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</u><u>계정으로의</u> 전출금
-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지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~ 5. (생 략)
 -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<u>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</u><u>계정으로의</u> 전출금
 - 4. (생략)
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지</u> 역
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
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
<u>으로의</u>
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
입과 세출) ①
·.
1. (현행과 같음)
2 <u>지</u> 역

- 2. -----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 으로부터의-----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<u>지역</u>
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
 정 및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
 으로의-----
 - 4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<신 설>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81조의2(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부터의 전입금
 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 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
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- ② 회계의 지역산업균형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 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 연·보조 또는 융자
 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

입금의 원리금 상환

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
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
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
로의 전출금
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
에 필요한 경비